|  |  |  |
| --- | --- | --- |
|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 규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재회[2018]10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재정청(국)•인력자원사회보장청(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정국•인력자원사회보장국, 중공중앙직속기관사무관리국, 국가기관사무관리국, 중앙군사위원회 후근보장부 재무국 :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을 규율하고 회계전문기술인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회계전문기술인원의 소질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및 <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 규정>(인력자원사회보장부령 제25호)에 근거하여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 규정>을 제정하여 인쇄발부하오니 따라서 집행하기 바란다.  첨부 :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 규정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2018년 5월 19일  첨부 :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을 규율하고 회계전문기술인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회계전문기술인원의 소질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및 <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 규정>(인력자원사회보장부령 제25호)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기관, 기업, 사업기관 및 사회단체 등 조직(이하 '기관•업체'로 약칭) 내 회계 전문 기술자격을 보유한 인원과 회계 전문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회계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하 '회계전문기술인원'으로 약칭)의 계속교육은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3조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은 경제사회 및 회계업의 발전 요구와 긴밀히 연결시켜야 하며 능력 강화를 핵심으로 지향성•실용성을 부각시키고 체계성•전망성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경제사회 및 회계업의 발전을 위하여 인재 보장과 지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간을 근본으로 수요에 맞는 교육을 시행한다.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은 회계전문기술인원을 지향하여 회계전문기술인원이 지식을 갱신하고 기능을 개발하며 지식구조를 보완하고 소질을 전면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2) 중점을 부각시키고 능력을 증진시킨다. 회계업의 발전추세와 회계전문기술인원의 종업 기본요구를 파악하여 회계전문기술인원이 신의성실 이념을 수립하고 직업도덕과 업무소질을 제고시키며 전문 능력을 전면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3) 지도를 강화하고 매커니즘을 혁신한다. 교육자원을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사회역량의 참여를 유도하며 계속교육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계속교육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며 계속교육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정부가 규획 및 지도하고 사회역량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고용주가 지원 및 협조하는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의 신 구도를 형성한다.  제5조 고용주는 본 기관•업체 회계전문기술인원의 계속교육에 참가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회계전문기술인원은 계속교육에 참가할 권리와 계속교육을 이수할 권리를 갖는다.  제6조 회계 전문 기술자격을 보유한 인원은 회계 전문 기술자격을 취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계속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 규정된 기간 내에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회계 전문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회계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회계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계속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 규정된 기간 내에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2장 관리체제  제7조 재정부는 전국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 정책을 제정하고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회동하여 전국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 업무의 조직 및 실시를 감독 및 지도하며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전국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 업무에 대한 종합관리와 전반적 기획 및 조율 업무를 담당한다.  이 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재정부서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가 공동으로 해당 지역의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은 재정부•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하 기관•업체의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중공중앙직속기관사무관리국•국가기관사무관리국(이하 '중앙주관기관•업체'로 통칭)는 재정부•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베이징 지역 중앙기관•업체의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 업무를 각각 담당한다.  제3장 내용과 형식  제9조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의 내용은 공통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한다.  공통과목은 회계전문기술인원으로서 응당히 보편적으로 숙지하여야 하는 법률법규, 정책이론, 직업도덕, 기술정보 등 기본 지식을 포함한다. 전공과목은 회계전문기술인원이 회계 업무에 종사함에 있어 응당히 숙지하여야 하는 재무회계, 관리회계, 재무관리,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회계 정보화, 회계 직업도덕, 재정•세무•금융, 회계 관련 법률법규 등 관련 전문지식을 포함한다.  재정부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회동하여 회계전문기술인원의 능력 구조에 근거한 계속교육 공통과목 지침, 전공과목 지침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의 내용에 대한 지도를 실시한다.  제10조 회계전문기술인원은 계속교육 참가 형식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회계전문기술인원은 다음 각 호의 형식으로 계속교육에 참가할 수 있다.  (1)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재정부서•인력자원보장부서,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정국•인력자원사회보장국, 중공중앙직속기관사무관리국, 국가기관사무관리국(이하 '계속교육관리부서'로 통칭)이 조직하는 회계전무기술인원 계속교육 교육훈련, 고급 회계 인재 교육훈련, 전국회계전문기술자격고시 등 회계 관련 고시, 회계 분야 전문회의 등 참가;  (2) 회계계속교육기구 또는 고용주가 조직하는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 교육훈련 참가;  (3) 국가교육행정주관부서가 인정하는 중등 전문 학력 이상(중등전문학력 포함, 아래도 같음)의 회계 분야 전문 학력 교육 이수; 계속교육관리부서 또는 업계조직(단체)의 회계 분야 연구과제를 담당하거나 국내 통일 간행물 번호(CN)를 보유한 경제•관리류 신문•잡지에 회계 전문분야 논문 발표; 회계 전문분야 서적 공개 출판; 공인회계사•자산평가사•세무사 등 계속교육 교육훈련 참가;  (4) 계속교육관리부서가 인정하는 기타 형식.  제11조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에 채택되는 과정•교학방법은 회계 업무의 요구와 특성에 부합되여야 한다. 온라인 교육 등 방식을 적극적으로 널리 보급하여 계속교육 교학 및 관리의 정보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야 한다.  제4장 학점 관리  제12조 회계전문기술인원의 계속교육 이수 관리는 학점제를 시행하며 매년 계속교육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이 90점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그중에서 일반적으로 전공과목의 총 학점이 2/3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회계전문기술인원이 계속교육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당해 연도에 한해 전국 범위 내에서 유효하며 다음 연도로 이월이 불가능하다.  제13조 이 규정 제10조에 정해진 형식으로 계속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그 학점 계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국회계전문기술자격고시 등 회계 관련 고시에 참가하는 경우 한 과목의 고시를 통과하거나 합격할 때마다 90학점으로 환산한다.  (2) 회계 분야 전문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1일당 10학점으로 환산한다.  (3) 국가교육행정주관부서가 인정하는 중등 전문 학력 이상의 회계 분야 전문 학력(학위)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1개의 학습 과정 또는 평가를 통과할 때마다 90학점으로 환산한다.  (4) 계속교육관리부서 또는 업계조직(단체)의 회계 전문분야 연구과제를 독립적으로 담당하여 과제를 완결시킨 경우 연구과제 1개당 90학점으로 환산한다. 타인과 협력하여 완성시킨 경우 각 연구과제별로 주진행자의 학점은 90학점으로 환산하고 기타 참여자의 학점은 각각 60학점으로 환산한다.  (5) 국내 통일 간행물 번호(CN)를 보유한 경제•관리류 신문•잡지에 단독저자로 회계 전문분야의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논문 1편당 30학점으로 환산한다. 공동발표의 경우 각 논문별로 제1저자의 학점은 30학점으로 환산하고 기타 저자의 학점은 각각 10점으로 환산한다.  (6) 단독저자로 회계 전문분야의 서적을 공개 출판하는 경우 회계 전문분야 서적 1부당 90학점으로 환산한다. 공동출판의 경우 회계 전문분야 서적별로 제1저자의 학점은 90학점으로 환산하고 기타 저자의 학점은 각각 60학점으로 환산한다.  (7) 기타 형식으로 계속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학점 계량 기준은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재정청(국)(이하 '성급 재정부서'로 약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정국이 해당 지역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및 중앙주관기관•업체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14조 회계전문기술인원의 계속교육 이수 상황 관리는 등기제를 시행한다.  고용주는 회계전문기술인원이 참가한 계속교육의 유형, 내용, 시간과 고시•고과 결과 등 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완료 후 지체없이 요구에 따라 관련 상황을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재정부서,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정국 또는 중앙주관기관•업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성급 재정부서,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정국, 중앙주관기관•업체는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회계전문기술인원이 계속교육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등기하고 회계전문기술인원의 계속교육 이수 상황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계속교육 등기는 다음 각 호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  (1) 회계전문기술인원이 계속교육관리부서가 조직한 계속교육 및 회계 관련 고시에 참가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재정부서,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정국 또는 중앙주관기관•업체가 직접적으로 회계전문기술인원을 위하여 계속교육 사항 등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2) 회계전문기술인원이 계속교육기구 또는 고용주가 조직한 계속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재정부서,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정국 또는 중앙주관기관•업체가 계속교육기구 또는 고용주로부터 제출받은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 정보에 근거하여 회계전문기술인원을 위하여 계속교육 사항 등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3) 회계전문기술인원이 상기 제(1)호, 제(2)호 이외의 기타 형식으로 계속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당해 연도 내에 소속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재정부서,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정국 또는 중앙주관기관•업체가 지정한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요구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업로드하고 계속교육 사항 등기 처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또는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계속교육관리부서에 계속교육 사항 등기 처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제5장 회계계속교육기구 관리  제15조 회계계속교육기구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1) 그가 담당하는 계속교육에 어울리는 교학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대면교육을 실시하는 기구는 그 외에도 상응하는 교육장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그가 담당하는 계속교육에 어울리는 교사 자원과 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완벽한 교학계획, 관리제도 및 기타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4) 그가 담당하는 계속교육 임무를 완성할 수 있어야 하며 교학 품질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5)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국가회계학원, 회계업계조직(단체), 각 유형의 계속교육 교육훈련기지(센터) 등이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을 전개하는데 있어 주요 경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하며 대학교•과학연구원 등 기관•업체가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유도하여야 한다.  제16조 회계계속교육기구는 계속교육 교학계획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며 계속교육의 범위, 내용, 비용 항목과 기준 등 상황을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회계계속교육기구는 전담직 및 겸직 결합의 원칙에 따라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이론 수준이 높은 업무 핵심 요원과 전문가•학자를 초빙하고 계속교육 교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8조 회계계속교육기구는 계속교육 교육훈련 기록을 구축하고 완비하여야 하며 고시 또는 고과 결과에 따라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 이수 증명을 발급하고 교육훈련 완료 후 지체없이 요구에 따라 관련 상황을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재정부서,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정국 또는 중앙주관기관•업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계속교육기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조작, 사기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2)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의 명목으로 관광을 조직하거나 기타 고소비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  (3)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의 명목으로 불법비용을 수취하거나 비용만 수취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6장 고과와 평가  제20조 고용주는 본 기관•업체의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과 사용•승진을 연결시킨 장려 제도를 구축하여야 하며 계속교육 이수 상황을 회계전문기술인원의 고과•평가 및 임용 여부 판단 시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하여야 한다.  회계전문기술인원의 계속교육 이수 상황은 회계전문기술직을 채용하거나 자격등급 인상 평정을 신청함에 있어 중요한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제21조 계속교육관리부서는 회계전문기술인원의 계속교육 이수 상황에 대한 고과와 평가를 강화하고 고과•평가 결과를 회계전문기술자격고시 참가, 모범 회계직 종사자 선정, 고급 회계 인재 선발 등의 근거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의 신용정보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회계전문기술인원이 규정에 따라 계속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계속교육관리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22조 계속교육관리부서는 회계계속교육기구•고용주가 이 규정을 집행한 상황에 대하여 법에 따라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 계속교육관리부서는 스스로 또는 제3자 평가기구에 의뢰하여 소재지 회계계속교육기구의 교학 품질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계속교육 임무 담당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24조 회계계속교육기구가 이 규정 제19조에 규정한 행위를 행하는 경우 계속교육관리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장 부칙  제25조 중앙군사위원회 후근보장부의 회계전문기술인원 계속교육은 이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26조 성급 재정부서,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정국은 해당 지역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회동하여 이 규정에 근거한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재정부•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제출하여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제27조 이 방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정부가 2013년 8월 27일 인쇄발부한 <회계인원 계속교육 규정>(재회[2013]18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  | **关于印发《会计专业技术人员继续教育规定》的通知**  财会〔2018〕10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人力资源社会保障厅（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政局、人力资源社会保障局，中共中央直属机关事务管理局，国家机关事务管理局，中央军委后勤保障部财务局：  　　为了规范会计专业技术人员继续教育，保障会计专业技术人员合法权益，不断提高会计专业技术人员素质，根据《中华人民共和国会计法》和《专业技术人员继续教育规定》（人力资源社会保障部令第25号），我们制定了《会计专业技术人员继续教育规定》。现予印发，请遵照执行。  附件：会计专业技术人员继续教育规定  财政部  人力资源社会保障部  　　2018年5月19日  附件：  会计专业技术人员继续教育规定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规范会计专业技术人员继续教育，保障会计专业技术人员合法权益，不断提高会计专业技术人员素质，根据《中华人民共和国会计法》和《专业技术人员继续教育规定》（人力资源社会保障部令第25号），制定本规定。  第二条 国家机关、企业、事业单位以及社会团体等组织（以下称单位）具有会计专业技术资格的人员，或不具有会计专业技术资格但从事会计工作的人员（以下简称会计专业技术人员）继续教育，适用本规定。  第三条 会计专业技术人员继续教育应当紧密结合经济社会和会计行业发展要求，以能力建设为核心，突出针对性、实用性，兼顾系统性、前瞻性，为经济社会和会计行业发展提供人才保证和智力支持。  第四条 会计专业技术人员继续教育工作应当遵循下列基本原则：  （一）以人为本，按需施教。会计专业技术人员继续教育面向会计专业技术人员，引导会计专业技术人员更新知识、拓展技能，完善知识结构、全面提高素质。  （二）突出重点，提高能力。把握会计行业发展趋势和会计专业技术人员从业基本要求，引导会计专业技术人员树立诚信理念、提高职业道德和业务素质，全面提升专业胜任能力。  （三）加强指导，创新机制。统筹教育资源，引导社会力量参与继续教育，不断丰富继续教育内容，创新继续教育方式，提高继续教育质量，形成政府部门规划指导、社会力量积极参与、用人单位支持配合的会计专业技术人员继续教育新格局。  第五条 用人单位应当保障本单位会计专业技术人员参加继续教育的权利。  会计专业技术人员享有参加继续教育的权利和接受继续教育的义务。  第六条 具有会计专业技术资格的人员应当自取得会计专业技术资格的次年开始参加继续教育，并在规定时间内取得规定学分。  不具有会计专业技术资格但从事会计工作的人员应当自从事会计工作的次年开始参加继续教育，并在规定时间内取得规定学分。  第二章 管理体制  第七条 财政部负责制定全国会计专业技术人员继续教育政策，会同人力资源社会保障部监督指导全国会计专业技术人员继续教育工作的组织实施，人力资源社会保障部负责对全国会计专业技术人员继续教育工作进行综合管理和统筹协调。  除本规定另有规定外，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财政部门、人力资源社会保障部门共同负责本地区会计专业技术人员继续教育工作。  第八条 新疆生产建设兵团按照财政部、人力资源社会保障部有关规定，负责所属单位的会计专业技术人员继续教育工作。中共中央直属机关事务管理局、国家机关事务管理局（以下统称中央主管单位）按照财政部、人力资源社会保障部有关规定，分别负责中央在京单位的会计专业技术人员继续教育工作。  第三章 内容与形式  第九条 会计专业技术人员继续教育内容包括公需科目和专业科目。  公需科目包括专业技术人员应当普遍掌握的法律法规、政策理论、职业道德、技术信息等基本知识，专业科目包括会计专业技术人员从事会计工作应当掌握的财务会计、管理会计、财务管理、内部控制与风险管理、会计信息化、会计职业道德、财税金融、会计法律法规等相关专业知识。  财政部会同人力资源社会保障部根据会计专业技术人员能力框架，定期发布继续教育公需科目指南、专业科目指南，对会计专业技术人员继续教育内容进行指导。  第十条 会计专业技术人员可以自愿选择参加继续教育的形式。会计专业技术人员继续教育的形式有：  （一）参加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财政部门、人力资源社会保障部门，新疆生产建设兵团财政局、人力资源社会保障局，中共中央直属机关事务管理局，国家机关事务管理局（以下统称继续教育管理部门）组织的会计专业技术人员继续教育培训、高端会计人才培训、全国会计专业技术资格考试等会计相关考试、会计类专业会议等；  （二）参加会计继续教育机构或用人单位组织的会计专业技术人员继续教育培训；  （三）参加国家教育行政主管部门承认的中专以上(含中专，下同)会计类专业学历（学位）教育；承担继续教育管理部门或行业组织（团体）的会计类研究课题，或在有国内统一刊号（CN）的经济、管理类报刊上发表会计类论文；公开出版会计类书籍；参加注册会计师、资产评估师、税务师等继续教育培训；  （四）继续教育管理部门认可的其他形式。  第十一条 会计专业技术人员继续教育采用的课程、教学方法，应当适应会计工作要求和特点。同时，积极推广网络教育等方式，提高继续教育教学和管理的信息化水平。  第四章 学分管理  第十二条 会计专业技术人员参加继续教育实行学分制管理，每年参加继续教育取得的学分不少于90学分。其中，专业科目一般不少于总学分的三分之二。  会计专业技术人员参加继续教育取得的学分，在全国范围内当年度有效，不得结转以后年度。  第十三条 参加本规定第十条规定形式的继续教育，其学分计量标准如下：  （一）参加全国会计专业技术资格考试等会计相关考试，每通过一科考试或被录取的，折算为90学分；  （二）参加会计类专业会议，每天折算为10学分；  （三）参加国家教育行政主管部门承认的中专以上会计类专业学历（学位）教育，通过当年度一门学习课程考试或考核的，折算为90学分；  （四）独立承担继续教育管理部门或行业组织（团体）的会计类研究课题，课题结项的，每项研究课题折算为90学分；与他人合作完成的，每项研究课题的课题主持人折算为90学分，其他参与人每人折算为60学分；  （五）独立在有国内统一刊号（CN）的经济、管理类报刊上发表会计类论文的，每篇论文折算为30学分；与他人合作发表的，每篇论文的第一作者折算为30学分，其他作者每人折算为10学分；  （六）独立公开出版会计类书籍的，每本会计类书籍折算为90学分；与他人合作出版的，每本会计类书籍的第一作者折算为90学分，其他作者每人折算为60学分；  （七）参加其他形式的继续教育，学分计量标准由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以下称省级财政部门）、新疆生产建设兵团财政局会同本地区人力资源社会保障部门、中央主管单位制定。  第十四条 对会计专业技术人员参加继续教育情况实行登记管理。  用人单位应当对会计专业技术人员参加继续教育的种类、内容、时间和考试考核结果等情况进行记录，并在培训结束后及时按照要求将有关情况报送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财政部门、新疆生产建设兵团财政局或中央主管单位。  省级财政部门、新疆生产建设兵团财政局、中央主管单位应当建立会计专业技术人员继续教育信息管理系统，对会计专业技术人员参加继续教育取得的学分进行登记，如实记载会计专业技术人员接受继续教育情况。  继续教育登记可以采用以下方式：  （一）会计专业技术人员参加继续教育管理部门组织的继续教育和会计相关考试，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财政部门、新疆生产建设兵团财政局或中央主管单位应当直接为会计专业技术人员办理继续教育事项登记；  （二）会计专业技术人员参加会计继续教育机构或用人单位组织的继续教育，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财政部门、新疆生产建设兵团财政局或中央主管单位应当根据会计继续教育机构或用人单位报送的会计专业技术人员继续教育信息，为会计专业技术人员办理继续教育事项登记；  （三）会计专业技术人员参加继续教育采取上述（一）、（二）以外其他形式的，应当在年度内登陆所属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财政部门、新疆生产建设兵团财政局或中央主管单位指定网站，按要求上传相关证明材料，申请办理继续教育事项登记；也可持相关证明材料向所属继续教育管理部门申请办理继续教育事项登记。  第五章 会计继续教育机构管理  第十五条 会计继续教育机构必须同时符合下列条件：  （一）具备承担继续教育相适应的教学设施，面授教育机构还应有相应的教学场所；  （二）拥有与承担继续教育相适应的师资队伍和管理力量；  （三）制定完善的教学计划、管理制度和其他相关制度；  （四）能够完成所承担的继续教育任务，保证教学质量；  （五）符合有关法律法规的规定。  应当充分发挥国家会计学院、会计行业组织（团体）、各类继续教育培训基地（中心）等在开展会计专业技术人员继续教育方面的主渠道作用，鼓励、引导高等院校、科研院所等单位参与会计专业技术人员继续教育工作。  第十六条 会计继续教育机构应当认真实施继续教育教学计划，向社会公开继续教育的范围、内容、收费项目及标准等情况。  第十七条 会计继续教育机构应当按照专兼职结合的原则，聘请具有丰富实践经验、较高理论水平的业务骨干和专家学者，建立继续教育师资库。  第十八条 会计继续教育机构应当建立健全继续教育培训档案，根据考试或考核结果如实出具会计专业技术人员参加继续教育的证明，并在培训结束后及时按照要求将有关情况报送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财政部门、新疆生产建设兵团财政局或中央主管单位。  第十九条 会计继续教育机构不得有下列行为：  （一）采取虚假、欺诈等不正当手段招揽生源；  （二）以会计专业技术人员继续教育名义组织旅游或者进行其他高消费活动；  （三）以会计专业技术人员继续教育名义乱收费或者只收费不培训。  第六章 考核与评价  第二十条 用人单位应当建立本单位会计专业技术人员继续教育与使用、晋升相衔接的激励机制，将参加继续教育情况作为会计专业技术人员考核评价、岗位聘用的重要依据。  会计专业技术人员参加继续教育情况，应当作为聘任会计专业技术职务或者申报评定上一级资格的重要条件。  第二十一条 继续教育管理部门应当加强对会计专业技术人员参加继续教育情况的考核与评价，并将考核、评价结果作为参加会计专业技术资格考试或评审、先进会计工作者评选、高端会计人才选拔等的依据之一，并纳入其信用信息档案。  对未按规定参加继续教育或者参加继续教育未取得规定学分的会计专业技术人员，继续教育管理部门应当责令其限期改正。  第二十二条 继续教育管理部门应当依法对会计继续教育机构、用人单位执行本规定的情况进行监督。  第二十三条 继续教育管理部门应当定期组织或者委托第三方评估机构对所在地会计继续教育机构进行教学质量评估，评估结果作为承担下年度继续教育任务的重要参考。  第二十四条 会计继续教育机构发生本规定第十九条行为，继续教育管理部门应当责令其限期改正，并依法依规进行处理。  第七章 附 则  第二十五条 中央军委后勤保障部会计专业技术人员继续教育工作，参照本规定执行。  第二十六条 省级财政部门、新疆生产建设兵团财政局可会同本地区人力资源社会保障部门根据本规定制定具体实施办法，报财政部、人力资源社会保障部备案。  中央主管单位可根据本规定制定具体实施办法，报财政部、人力资源社会保障部备案。  第二十七条 本规定自2018年7月1日起施行。财政部2013年8月27日印发的《会计人员继续教育规定》（财会〔2013〕18号）同时废止。 |